

기안 용지		지정장
불용기호 문서번호	별지 02024	(번호: 713 - 6156)
보증기간	61 5. 3. 1. ~	시
수령일자 보증기간	영 7	장
시행일자		
부	부지 청	지통제
기	기획 관리	
기	설	
판	제작부 담당원	
기안책임자	별지 제11호	
상	상	
수	수	
집	집	
세	세	
수	서울특별시 아파트형 공장 설치·관리 요령 세부지침	발령
(제 1 앨)		
수신처: 내부전재		
제목: 갈은 것		
1. 서울특별시 아파트형 공장 설치·관리 요령 세부지침		
을		
서울특별시 행정사무국 규칙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		
부에 개재 명령하고자 합니다.		
첨부부: 명령안 1부.		
(제 2 앨)		
수신처: 공보관		

1505-25(2-1) 일(1)3
85. 9. 9. 증인

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/m²
4-40-41 1986. 4. 8.

제 목 : 시 모 개재

1. 병천 서울특별시 아파트영 공장 설치·관리 요령 세부지침을

제재

시보에 개재 발령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운령 제 711 호 1부. 끝.

(제3안)

주 소 : 상공광장

제 목 : 운령 발령

1. 상공28012-501 (90.8.28.) 호와 관리임.

2. 서울특별시 아파트영 공장 설치·관리 요령 세부지침을

시보에 개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차오 없도록 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운령 제 711 호 1부. 끝.

(9-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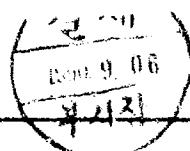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아파트영 공장 설치·운영 요령 세부지침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9월 7일

서울특별시장

인



서울특별시아파트영 공장 설치·관리요령 세부지침

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상공부 고시 제90-16호(이하 "고시"라한다)에 의한 아파트영공장의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허가 신청절차) ① 아파트영공장을 신·증설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(이하 "설치자"라 한다)는 허가 신청서에 고시 제4조 또는 제11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소재지 관할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설치의 필요성,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을 경유, 상공부장관에게 설치지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기준건축물의 용도변경) ①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을 아파트영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장의 주위여건, 건물의구조, 설비, 안전에 관한 사항등을 조사하여 공장 설치 기준에 적합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설치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② 아파트영 공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 설치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설치완료 보고를하고, 구청장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아파트영 공장의 공급방법 및 가격) ① 설치자는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임대, 분양, 혼합방식 그리고 일반, 특별, 단체등 공급방법과 입주 업종을 정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본양(임대) 시기는 공사착공 전·후 공장건설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자가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③ 아파트형공장의 공급가격은 설치자가 시장, 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공장 건설시 소요된 원가로 본양 또는 임대하고 설치자가 고시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목적의 경우에는 당해공장 건설시 소요된 원가에 이윤을 가산한 최종가격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입주제한 및 우선순위 부여등) ① 설치자는 고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 공장총 닥을 각호에 해당되는 입체에 대해서는 공장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소음, 진동등이 심하고 생산 및 취급물품의 종량, 부피가 과다하거나 위험물 취급업종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체
- 2.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장을 분양 받았던 사실이 있는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장을 재분양 받을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.
- ② 설치자는 고시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기준 이외에 다음과 같이 입주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.

 - 1. 아파트형 공장설치 관할구청 관내에 소재하는 공장, 인접지역 구청관내 소재공장
 - 2.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내의 저소득 시민층의 취업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장은 주변 유동 노동력 이용도가 높은 업종이 우선

- ③ 설치자가 특수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공장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한 공장으로 안정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입주자의 모집) ①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중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, 동일 여건일 경우 추첨에 의한다.

- ② 설치자는 10%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, 입주 확정된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신청한 자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하는자가 발생되는 경우에 예비 입주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수 있다.

제 7 조 (아파트형 공장의 전매행위등의 제한) ① 설치자가 본양 공급한 아파트형 공장은 당해공장을 최초로 공급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으며,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아파트형 공장은 타인에게 이를 전대할 수 없다.

② 입주 확정자가 입주전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즉시 계약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, 입주후 폐업, 이전등으로 아파트영 공장에서 되기 어려야 할 경우에는 임대공장은 설치자에게 반납하고, 분양 공장은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예비선정업체 혹은 분양당사 입주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심의위원회 구성운영) ① 시장(구청장, 도시개발공사 포함)이 건설공급하는 아파트영 공장의 설치, 공급방법, 공급가격, 관리등에 대하여 아파트영 공장의 설치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용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관기관 관계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1. 공장설치자
2. 중소기업중앙회(서울시 회의)
3. 대한상공회의소(서울상공회의소)
4. 중소기업진흥공단
5. 공장소재지 구청
6. 시공자 대표, 기타 설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기관의 관계관

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주관부서의 담당국장(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"국장"을 말한다)이 되며,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

제 9 조 (관리자의 업무등) ① 고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고시 제2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와 기타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입주업체 가동현황을 분기별로 매분기말로 부터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,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말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일반공장과 구별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아파트영 공장등록 관리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안전관리) ① 관리자는 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타 안전관리 시설 및 정기진단 관리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3조의

한국 관리 시설 막기 기준

제 11 조 (아자보수) 아자보수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의 범위를 준용하며, 아자보수 보증금의 금액 및 내용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2 조 (장기 수신개의) 관리자는 고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신 개의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장기 수신개의에는 공장등 건물의 도색과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주요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행정사항) 시장(구청장, 도시개발공사 포함)이 설치하는 아파트영 공장의 사업추진은 당해 목적사업 추진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, 주무부서는 설치부지 및 예산의 확보, 설계, 시공, 분양(임대),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하며, 관계유관 부서에서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四
七

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이로 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아파트형 공장 설치 완료보고서

보 기 인 부 록 내 용	상 호 대 청 자 이 름 주 소 (법인등록자체) 물 철 소 재 지 물 철 의 업 종 (업종의 단수일때는 별지가함) 물 철 대 지 면적(㎡) 생 산 시 설 면적(㎡) 작 용 일	수 인 등 록 면적 분 류 면 적 총 철 구조 면적(㎡) 원 경 시 설 면적(㎡) 총 용 일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공업매자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물 철 설치의 원리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부 고 인 (인)

(문서장)

(인)

구비서류 :

- 건축법상 건축준공검사서
- 건축배지도

아파트 공동장 등록 관리 대장

(별지 제2호 서식)